

第122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 1 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6月25日(火) 11時14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22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3. 서울特別市鐘路區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附議된案件

1. 第122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2面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2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面

(11時14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朴鍾仁 事務局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朴鍾仁 事務局長 朴鍾仁입니다. 제122회 임시회 집회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洪起瑞議員 外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22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은 2002년 6월 17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002년 6월 19일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한편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님과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님께서 지난 6.13 지방선거시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시기 위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 27일자로 구의회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하여 의원의 사직이 허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以煥 朴鍾仁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이 金福同議員으로부터 신청되었습니다. 金福同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福同議員 안녕하세요? 金福同議員입니다. 월드컵, 4강신화를 만드는 붉은악마의 광장 광화문 등을 비롯해 종로의 구석구석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오시는 존경하는 金以煥議長님과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行 그리고 3대 의회를 대과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종로구의회 선배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같이 못하시는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서운한 마음을 전하며 다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는 말 그대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방도로의 여유 공간 부분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할 수 있도록 편의상 그려놓은 주차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기간을 이용하여 어느 특정업체에 주차관리를 하도록 22%의 이윤을 주는 것으로 11월 1일자로 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데 지역의원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종로는

종로입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금천구는 1만대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개인 위탁업체가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行께서는 종로구 7천 여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개인업체에게 인터넷 관리체제로 맡기지 마시고 우리 구는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지금처럼 관리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개인 업체가 관리토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다시금 우리 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종로5·6가동은 본 의원 선거구는 약50만 인구가 생업에 열중하고 있으며, 주차난이 전 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금천구처럼 주거지역이 많은 지역과 같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절대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오니 다시금 검토하시어 계약을 해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게 되면 관리비 2억원 이상 수입이 늘며, 한 개 동에 1명 내지 2명씩 주차관리요원을 이용한다면 19개 동에서 30여 명의 실업자를 구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李老根 區廳長 權限代行께서는 왜 하필이면 6.13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단 한 달도 시행해보지 않고 개인 업체에게 다른 구를 예를 들어 계약을 체결했는지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습니다. 종로5·6가동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절대 반대하는 바이오니 즉시 해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우리 구민을 위하는 길이니 해약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을 구분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는 금천구가 아닙니다. 종로구는 종로구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以煥 金福同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 第122會 鐘路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11時23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종로구의 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22

회 종로구의 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6월 25일 1 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議事日程

(運營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22회 종로구의 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朴鍾植 議員과 吳弼根 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부된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셔서 잠시후 속개되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時23分 會議中止)

(12時25分 繼續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 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종로

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위원회 洪起瑞 幹事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代理 洪起瑞** 市民行政委員會 幹事 洪起瑞議員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님! 그리고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李老根 區廳長 權限 代行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시는 지역구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푸르른 녹음과 무더위가 밀려오는 성하의 계절에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들께서는 6.13 지방선거를 치르시느라 체 여독이 풀리지 않으셨을 텐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하심에 여간 기쁘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간 바쁘신 중에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8년부터 추진해온 공무원 정원감축에 따른 구조조정의 마무리로 우리 구는 2002년 7월 31일까지 직종, 직급별 초과인원 40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으나 정부 초과 현원에 대한 합리적 해소방침에 따라 총정원 범위 내에서 직종 직급별 불일치 정원을 한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그 근거조항이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정·현원 관리지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 12월 29일 조례 제347호로 공포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부칙 제3조에는 직종 직급별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총정원과 관계없이 초과현원을 2002년 7

월 31일까지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는 바 동조례 부칙 제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0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새로이 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조조정 마무리 결과 우리 구 공무원 총정원은 2002년 7월 31일 현재 1,259명이며 현원은 1,285명으로서 26명의 초과현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제43조 및 공무원 임용령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별도로 인정되는 휴직자 7명, 파견 6명, 공로연수 16명 등 총 29명이 별도 정원으로 확보되거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총 정원 범위를 초과하는 현원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우리 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규정상으로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현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직종, 직급별로 일치하지 않는 인원 40명은 2002년 7월 31일까지 면직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직종, 직급별 정원의 불일치로 인하여 2002년 7월 31일까지 면직되는 공무원을 구제하고자 2002년 6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장 중 현원관리지침 시달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이 중 초과되는 대다수 공무원은 장기간 큰 대과 없이 공직자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자들이나 단지 초과현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직권면직될 경우에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위치 상실로 인한 고초와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됨으로 정부 방침대로 합리적으로 초과현원을 처리하는 것이 전체 공무원 사기양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행정자치부에서는 2002년 8월 1일부터 2003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직종 직급별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해소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러나 기관별 공무원을 직종 직급별로 정원을 책정한 것은 업무 기능별로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소 유 인력을 산정한 후 정원을 정함으로써 업무별로 적정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나 직면면직 대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이러한 취지와 어긋나게 초과현원에 맞추어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업무 기능별로 업무량에 비해 잉여 인력들은 부족인력이 발생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직종과 직급이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하나 우리 구는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에 한하여 불일치 인원이 발생하고 있어 부작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조직 및 인력진단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직종간 업무량과 비례하는 적정인력을 산정후 정원을 책정하는 등 인력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

(案) 審査報告書

(鐘路區廳長)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洪起瑞 幹事!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

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은 시민행정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2時36分 閉會)

○出席議員 16人

- | | | | |
|-----|-----|-----|-----|
| 金以煥 | 鄭泰淳 | 吳錦南 | 千相旭 |
| 玄壽漢 | 丁炳煥 | 劉燦鍾 | 李炯述 |
| 洪承台 | 金福同 | 朴鍾植 | 吳弼根 |
| 洪起瑞 | 李東奎 | 金正大 | 宣相善 |